

그럼 각 상임위원회별로 아직 위원님들 계시니까 두 분 이하로 조정을 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두 분이 되시면 두 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최종철 위원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김재근 그리고 네 분이 되는 경우에 본회의는 10시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니까 아주 여기서 10시로 문을 박초, 뭐.

네 분이 되면 하는 것 보다는.....

○송옥순 위원 이것을 11시에 뭐 질문하고 답변 들어가기전에 점심시간 시작하고, 뭐 어떻게 또 보충질문 못 하고 하다보면은 금방 점심시간되고 오후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날은 뭐 10시쯤 해도 괜찮지 않아요?

○위원장 김재근 도정질문을 하는 29일, 30일, 10월 1일은 10시에 한다.

그런데 10월 1일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기획경제 하나니까요.

29일하고 30일 개의시간을 10시에 하는

것으로.....

○임현웅 위원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장 김재근 예, 그러면은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는 도정질문이 있는 9월 29일, 9월 30일, 10월 1일은 10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도정 질문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뭐, 또다른 의견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안년월일 : 1997. 8. 30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1. 주 문

-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1997년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11일간으로 한다.

2. 제안이유

- 199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도정질문
○ 안전심사 및 당면사항 협의
○ 기타안전 처리

의 사 일 정 (안)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1997. 9. 22 ~ 10. 2 (11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9월22일(월)		
14 : 00	< 개 회 식 >	
14 : 15	< 제 1 차 본 회 의 >	
	1.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1997. 9. 22 ~ 10. 2 (11일간)	
	2. 199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3.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기타안전 처리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9월23일(화) ~ 9월25일(목)	<p style="text-align: center;">< 휴 회 ></p> <p>□ 상임위원회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안전심사 및 당면사항 처리 	
9월26일(금) ~ 9월27일(토)	<p style="text-align: center;">< 휴 회 ></p> <p>□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9월28일(일)	<p style="text-align: center;">< 공 휴 일 ></p>	
9월29일(월) 10 : 00	<p style="text-align: center;">< 제 2 차 본 회 의 ></p> <p>1. 도정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무 위 원 회 · 교육사회위원회 	
9월30일(화) 10 : 00	<p style="text-align: center;">< 제 3 차 본 회 의 ></p> <p>1. 도정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10월1일(수) 10 : 00	<p style="text-align: center;">< 제 4 차 본 회 의 ></p> <p>1. 도정질문 · 기획경제위원회</p>	
10월2일(목) 11 : 00	<p style="text-align: center;">< 제 5 차 본 회 의 ></p> <p>1. 199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부의안건 처리 3. 기타안건 처리</p>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
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위원장 김재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제141회 충청북도
의회 임시회 회기중에 있는 도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
법 제37조의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의규
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일시는 9월
29일부터 10월1일까지로 3일간으로 하고,
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며, 대상공무원은
도지사 및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
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중 실·국·원장, 본
부장, 개발사업소장, 중평출장소장 이상
급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
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제
안으로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
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
다.

3.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